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9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414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단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1. 26.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1.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게 한 2010년분 도시계획세 7,648,990원, 2011년분 재산세 7,954,010원, 2012년분 재산세 8,047,860원, 2013년분 재산세 8,047,860원, 2014년분 재산세 8,129,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 및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2010년분의 세목을 '재산세'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도시계획세'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9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5조의9 제1, 2항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75년경부터 구미산업단지 부지 내에 있는 [redacted]시 [redacted]동 [redacted] 체육용지 23,9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redacted]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단 운동장(이하 '이 사건 운동장)을 설치·관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4. 10. 23. ~ 10. 24.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5.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2010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재산세 합계 39,828,7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과세대상	과세연도	세목	과세표준	부과세액
이 사건 토지	2010년	도시계획세	5,463,564,400	7,648,990
	2011년	재산세	5,681,436,600	7,954,010
	2012년	재산세	5,748,474,200	8,047,860
	2013년	재산세	5,748,474,200	8,047,860
	2014년	재산세	5,807,132,100	8,129,980
	합 계		28,449,081,500	39,828,700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9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설치하는 운동장'은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원고는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구미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았고, 이 사건 운동장의 설치 및 관리업무는 산업집적법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운동장의 설치 및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인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운동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그 부지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 관련 법령에서 원고를 국가 등으로 의제한다거나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를 행정청으로 보아 지방세를 비과세할 경우, 지방세제한특례법에서 산업단지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둔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산업집적법 제37조의2 제1호의 내용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9

비추어 원고가 주요 업무인 '입주계약 체결 및 공장의 등록' 및 이와 유사한 관리업무를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경우에 한하여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운동장의 설치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원고를 행정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redacted]산업단지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4호의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한다.

2) [redacted]도지사는 1978. 9. 8.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redacted]도 고시 제260호).

3) 이 사건 운동장은 축구장, 스탠드, 산책로, 체육운동기구, 화장실, 주차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고는 2012. 6.경 326,265,920원을 들여 이 사건 운동장을 리모델링하였다. 그 후 원고는 [redacted]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유관기관 및 지역시민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및 친목도모활동(단합대회 등)의 용도로 이 사건 운동장을 대여해오고 있으며, 대여 시에는 공사비 보전 차원에서 최소한의 실비만을 지급받고 있다.

4) 이 사건 운동장의 연도별 사용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운동장을 총 105건 대여하였고(사용인원 33,551명), 그로 인한 대여수입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9

1,740,000원이다.

라. 판단

1)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을 의미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의 설치주체인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이나 국토계획법에서 행정청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는 산업집적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취지, 문언 등에 비추어 원고를 이 사건 운동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지방세법 관련 법령에서 원고를 행정청으로 의제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여 원고가 행정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운동장의 설치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산업집적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51조 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9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리고 관리권한의 일부를 공단(산업집적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를 의미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집적법 제2조 제15호 나목은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집적법 제2조 제1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5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1.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용수공급시설·정보통신시설·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2. 제1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공공시설이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공동방지시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의미하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공공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운동장의 대여 대상 및 용도, 연도별 사용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9

미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의 생활 편의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 사건 운동장을 설치·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운동장은 산업집적법 및 그 시행령에서 말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운동장의 설치 및 관리업무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5호 나목에서 정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에 해당하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사건 운동장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은 관리권자가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산업집적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관리업무 일체를 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고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관리업무가 반드시 입주계약의 체결 및 공장의 등록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는 재산세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비과세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를 행정청으로 보더라도 지방세제한특례법에서 산업단지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재산세 감면규정을 둔 취지가 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설치한 이 사건 운동장의 부지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9

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임성민

판사 이아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9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9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16. "관리권자"란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 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의9(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9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5조의13(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9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조 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기관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 법 제2조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② 법 제2조 제1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용수공급시설·정보통신시설·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2. 제1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9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④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가 직접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시설 부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9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끝.